

창원지방법원 2022. 4. 8 선고 2021가단3789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입주사협의회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권영준, 이지안

변 론 종 결 2022. 3. 18.

판 결 선 고 2022. 4. 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29,281,360원 및 이에 대한 2021. 6. 7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원고는 창고형 아파트 집합건물인 A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고 한다)의 입주사협의회로서, 2020. 2. 27.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도급을 주었고 계속해서 13개월간 용역비를 지급해왔는데, 피고가 국민연금 미 해당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결근자에 대한 급여 부분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비에서 감액정산을 하지 않았고, 또 원고로부터 약정 용역대금에서 매달 2,800,00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아 합계 129,281,360원(국민연금 등 감액 미정산금 92,881,360원 + 매달 초과지급액 36, 400,000원)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.

2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.

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가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며, 비법인가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6다64573 판결, 대법원 2013. 4. 25. 선고 2012다118594 판결 등 참조).

그런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원고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.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이유 있다.

3. 부가적으로 본안에 관하여 본다.

민법 제741조는 “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.”라고 정하고 있다.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, 취소,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,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).

피고가 약정된 용역대금으로는 피고의 이윤이 적어, 원고가 국민연금 대상자 여부를 불문하고 급여 외 간접노무비는 정산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했고, 또 매월 280만 원을 피고에게 더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용역비를 초과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,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용역대금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임수연